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

시행 : 2022. 03. 01.

제26조(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)

-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②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⑤ 국제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과정 중 이수한 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12학점까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27조(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)

-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·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,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,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
- ③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.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시행 : 2022. 03. 01.

제9조(추가이수학점)

-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동일 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 학과 졸업생은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,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일계의 경우 6학점 이상,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.
-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추가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입학전 이수학점 인정)

- 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,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.
-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③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의 2/3 이내에서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, 법학대학원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- ⑤ 국제대학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일반대학원내규

시행 : 2022. 03. 01.

제37조(학점인정 등)

편입한 자는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,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,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